

< 주요 변경 대비표 >

1. 변경대상 펀드명 및 변경 문건:

No.	펀드명	구분	신탁계약서	투자설명서	간이설명서
1	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자	○	○	○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9년 4월 19일(금)

3. 주요 변경사항:

[1] 신탁계약서:

-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[D+1 일(D+2) => D+2 일(D+3)],
-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 [D+8 일(D+9) => D+7 일(D+8)], 법개정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5 조 (자산운용 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---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---
제 25 조 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생략)으로 한다. 다만, ---.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현행과 동일)으로 한다. 다만, ---.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 27 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9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10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②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45 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제 2 항	5.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5.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제 49 조 (금전차입 등의 제한) 제 1 항	1.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.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신설	1. 법제 235 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.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
제 50 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	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5 항	<p>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</p>	<p>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(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 <p>4.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</p>
제 50 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제 7 항	<p>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,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(자산운용보고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교부가 제외됨)에는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⑦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,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신탁업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,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⑨~⑫ 조항번호 변경 반영</p>
부 칙	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

[2] 투자설명서:

-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[D+1 일(D+2) => D+2 일(D+3)],
-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[D+8 일(D+9) => D+7 일(D+8)],
- 재무제표 데이터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, 법개정사항 반영 등

구분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가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		업데이트
제 2 부. 5. 다.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		업데이트
제 2 부. 8. 나. 투자제한		법개정사항 반영
제 2 부. 9. 가. (2)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개요및투자전략		업데이트
제 2 부. 9.가.(3)위험관리⑤		업데이트
제 2 부. 11. 가. (2)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<u>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</u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<u>기준가격</u>(생략)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<u>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</u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<u>기준가격</u>으로 한다.</p>	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<u>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</u> 공고되는 당해 종류 <u>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(현행과 동일)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<u>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4 영업일에</u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<u>기준가격</u>으로 한다.</p>
제 2 부. 11. 나.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<p>①17시(오후 5시)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: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D)로부터 제 4 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9 영업일(D+8)에 지급</u></p> <p>② 17시(오후 5시)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: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D)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10영업일(D+9)에 지급</u></p>	<p>①17시(오후 5시)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: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D)로부터 제 4 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8 영업일(D+7)에 지급</u></p> <p>②17시(오후 5시)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: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(D)로부터 제 5 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9 영업일(D+8)에 지급</u></p>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업데이트
제3부. 1. 재무정보		업데이트
제3부.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	업데이트
제3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업데이트
제4부. 1.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		업데이트
제4부. 1. 라. 운용자산 규모		업데이트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 5 부.2. 가. 의무해지		법개정사항 반영
제 5 부.3.가. (2) 자산운용보고서		법개정사항 반영
제 5 부.3.가.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	법개정사항 반영

[3] 간이투자설명서

-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[D+1 일(D+2) => D+2 일(D+3)]

-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 [D+8 일(D+9) => D+7 일(D+8)]

- 재무제표 데이터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등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. 보수		업데이트
I. 매입 방법	17 시(오후 5 시)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 적용	17 시(오후 5 시) 이전(경과 후) : 제 3(4)영업일 기준가격 적용
I. 환매 방법	17 시(오후 5 시) 이전(경과 후) 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 적용/ 제 9(10)영업일 지급	17 시(오후 5 시) 이전(경과 후) : 제 4(5)영업일 기준가격 적용/ 제 8(9)영업일 지급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. 3) 운용전문인력		업데이트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. 4) 투자실적추이		업데이트